

보도설명자료

(’18. 9. 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태양광 폐패널 ‘골칫거리’...규정 없어 ‘환경오염’
우려 (’18. 9. 4, KBS)

1. 기사내용

□ 태양광 패널, 사용후 처리 문제

-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어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데, 아직 재활용이나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태양광 폐모듈은 폐기물관리법(환경부 소관)에 따라 산업일반 폐기물로 분류*되며, 이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

*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폐태양전지 규정(’16.7.21)

□ 한편, 산업부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기술 연구 및 폐모듈 재사용·처리 등을 위해 ‘16년부터 ‘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’ 사업 추진 중

-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폐모듈에서 유리, 은, 실리콘, 납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 및 처리할 예정

※ 문의 :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경호 과장/ 이기현 사무관 (044-203-5362)